

1. 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면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뢰하도록 한다.
 - 2) 지역단체의모임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 3) 월 정기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지역 내 우선방송(온라인)을 통하여 모집한다.
 - 4)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기간동안 강화군 내 계시대에 현수막(오프라인)을 설치하여 수시로 모집한다.
 - 5)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계약기간 -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협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건자료로 판정될 때
 -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선납금으로써 전월 말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라. 재계약서는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 서비스의 내용
-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 3) 개인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구 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방문목욕	240분 이상	66,770원
	목욕차량 이용(차량내)	84,670원
	목욕차량 이용(가정내)	76,340원
	목욕차량 미이용	47,670원

-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1) 권리
 -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의무
 - 가)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 3)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 5) 방문목욕
 - 방문목욕
 - 6)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 7)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대상자 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